

	<h1>보 도 자 료</h1>			
	보도	2021.4.27.(화) 10:00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가계금융과장 권 유 이(02-2100-2510)	담 당 자	김기태 사무관(02-2100-2523)
	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 채 석(051-663-8471)		이기태 팀 장(051-663-8472) 임남윤 팀 장(051-663-8352)

제 목 : '21.6.9일부터 주택연금 수급권 보호가 강화됩니다. -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

- ◆ '21.4.27일, **주택연금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**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
- '21.6.9일부터 연금수급권이 **배우자에게 자동승계**되는 주택연금 및 연금수급액의 **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**이 도입됨

1 주택연금 개요 및 추진경과

■ **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.**

- 주택연금은 자기 집에 살면서 노후생활소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
 - '07년 도입된 이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고령층의 소득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- '20.12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확대하고 보장성은 강화하는 내용의 **주택금융공사법**(‘주금공법’) **개정***이 이루어졌으며
 - 이에 따라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내용의 **주금공법 시행령 개정안**이 '21.4.27일 국무회의를 통과'하였습니다.

* ①가입주택가격 '공시가 9억원' 확대 ②주거용오피스텔 가입허용 ☞ 법 개정 즉시 시행(20.12월)
 ③신탁방식 주택연금 ④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 ☞ 금번 시행령 개정 후 시행(21.6.9일)

2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?

① 가입자 희망시, 연금수급권의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해집니다.

-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으로 가입자가 희망*하면,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**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**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합니다.

*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

【배우자 자동승계 기대효과 예시】

- ▶ A씨 부부는 공동명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였고 남편이 먼저 사망 하였습니다.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수급권이 이전되려면 자녀 모두의 동의를 필요한데, 자녀 중 한명이 동의하지 않아 주택연금이 끊기고 그간의 연금대출도 모두 상환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.
- ▶ 앞으로는 가입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하여, 생존해 있는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게 됩니다.

② 주택 일부(예: 방 한 개)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.

-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**주택연금**과 함께 **월세 소득도 수취**하실 수 있습니다.

【주택일부에 임대를 준 단독주택의 주택연금 이용 기대효과 예시】

- ▶ B씨(70세)는 본인 집(시가 2억원) 2층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청년(보증금 500만원/월세 20만원)에게 받은 보증금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.
- ▶ 앞으로 B씨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고 **월세(20만원)**와 함께 **주택연금(월 61만원)**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(주금공으로 이전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자(예금금리 수준)도 지급)

③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됩니다.

-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('민사집행법'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)까지는 **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**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, **연금수급권을 보호**합니다.

3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추진 성과

□ 주택연금 활성화방안('19.11월)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

【주택연금활성화 방안('19.11월) 주요 추진 성과】

주요과제	추진상황	성과(~'21.3월)
가입연령 인하(60세→55세)	완료 (시행령 개정완료, '20.4.1.)	275가구 추가 가입
주택가격상한 확대(공시가 9억원)	완료 (법 개정완료, '20.12.8.)	633가구 추가 가입
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	완료 (법 개정완료, '20.12.8.)	56가구 추가 가입
취약고령층 지급액확대(13→20%)	완료 (주금공 내규개정, '19.12.2)	1,860가구에 우대지급
신탁방식주택연금 도입	도입예정 (금번 개정, '21.6.9~)	
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	도입예정 (금번 개정, '21.6.9~)	

□ '신탁방식 주택연금' 및 '압류방지통장' 도입은 상위법(주금공법) 시행 시기에 맞추어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되며,

○ 시행 이전에도 전국 25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(☎ 1688-8114)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<p>공공누리 공공지착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</p>	<p>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</p>	 <p>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</p>
--	---	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